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
----------	----

2014년 9월 30일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 8. 28. 김동욱 의원(찬성자 19명)
- 나. 회부일자 : 2014. 8. 28.
-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4년 9월 2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김동욱 의원)

### 가. 제안이유

- 서울시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의표가 되는 공무원 및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기관, 개인(학생) 또는 외국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규정」은 의회의 예규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조직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므로, 의회 표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표창 규정(1999.12.17 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조례로 재정립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의정활동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로서 개인, 학생,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제7조).
- 2)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되, 패로서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3)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4)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 5) 표창대상자는 의원과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이 추천하며, 시민 20인 이상과 시민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6)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수상자명부에 등재하도록 하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 표창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규정」 (의회예규 제47호)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 : 박 노 수)

### □ 검토요지

#### 가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 지역사회 발전과 의회 의정활동 지원 등에 현저한 공적 등이 있는 공무원,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표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행정규칙(예규)인 「서울특별시의회 표창규정(이하 '표창규정)」이 있으나, 의장의 표창수여권이 대외적인 의사표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예규가 아닌 조례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 체계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임.

#### 나 입법형식에 대한 검토

- 지방의회 의장은 해당의회의 대표자로서 지방의회 외부에 대하여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바,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하겠음.
- 의장의 표창수여권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현행 「표창규정」은 행정규칙인 예규인 바, 행정규칙은 법규와 같이 일반 국민에 대한 관계를 규율하기 보다는 '행정의 조직이나 활동을 보다 자세히 규율하기 위한 일반추상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갖추기 어려움.
- 의장의 표창수여권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시민과 외부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할 당위성이 있으며, 그 성격은 자치조례로서 분류할 수 있음.

※ 조례는 상위법령과의 관계에서 볼 때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구분할 수 있는 바, 의장의 표창수여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대표자로서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자치조례에 속한다고 할 것임.

- 결론적으로 의장이 지방의회의 대표자라는 점에서 표창수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과, 표창수여권의 법적 근거로서 예규 등 행정규칙이 아닌 조례에 근거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감안할 때 본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임.
- 참고로 17개 주요 광역시도의회 중 대전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및 충청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공포·시행 중에 있음.

**다 표창방법 및 부상(제8조)**

표창규정	제정안
<p>제 8 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p> <p>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p>	<p>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p>

- 제정안은 표창방법과 부상에 대해 명시하면서 ‘패 및 부상’의 수여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가목과 나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적용한 주의적 규정으로서 문제점 없다고 사료됨.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 2005. 8. 30.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질의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행사가 없더라도 지역 사회 발전이나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시민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 명의 표창장(부상 제외)의 발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별도의 지방의회 포상 조례가 있어야 하는지?

○ 2005. 10.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장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시상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밖의 자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임.

## 라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안 제11조)

- 제정안은 공적심사위원회를 추천권자에 따라 제1공적심사위원회와 제2공적심사위원회로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하고 있음.

▶ 공적심사위원회 구분

구분	추천권자	위원구성	위원 구성방법
제1공적심사위	의원	·위원장: 운영위원장 ·위원: 5~6인 ·간사: 의정담당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
제2공적심사위	사무처 공무원·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	·위원장: 사무처장 ·위원: 5~6인 ·간사: 총무팀장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제정안은 제2공적 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현행 「표창규정」과 달리,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참여 대상의 폭을 넓히고 있음.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 비교

구분	표창규정	표창조례안
제1공적심사위	-위원장: 운영위원장 -위원: 운영위원회 위원	좌동
제2공적심사위	-위원장: 의정담당관 -위원: 실장, 의사담당관, 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위원장: 사무처장 -위원: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

- 또한 제정안은 「표창규정」과 달리, 회의방법에 있어서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서면심의절차를 신설하였음.
- 검토하건데, 자의적인 표창수여권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 구성 방법을 예규(행정규칙)가 아닌 조례에 보다 명확히 명시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안

(김동욱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7
----------	----

발의년월일 : 2014년 08월 28일

발 의 자 : 김동욱 의원(1명)

찬 성 자 : 우창윤·이순자·성백진·이신혜·  
이복근·오승록·박마루·김영한·  
우영찬·조규영·최영수·유광상·  
김동승·오봉수·김광수(도봉)·  
김선갑·김인호·전철수·  
김용석(도봉) 의원(19명)

## 1. 제안이유

- 서울시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일반의 의포가 되는 공무원 및 의회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기관, 개인(학생) 또는 외국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근거가 되는 「서울특별시의회 표창규정」은 의회의 예규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조직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므로, 의회 표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표창 규정(1999.12.17 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조례로 재정립하여 그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1)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 의정활동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로서 개인, 학생,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5조~제7조).



- 2)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하되, 패로서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3)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4)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 5) 표창대상자는 의원과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이 추천하며, 시민 20인 이상과 시민단체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6)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는 수상자명부에 등재하도록 하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 표창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의례적 행위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규정」 (의회예규 제47호)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의회 표창조례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로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제4조(표창권자)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으로써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

여한다.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표창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시의회에 둔다.

1. 의원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한 경우,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2. 시의회사무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해 추천된 표창대상자의 경우,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제1공적심사위원회에는 의정담당관, 제2 공적심사위원회에는 총무팀장이 된다.
  - ④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 ⑤ 각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대상자는 의원과 담당관, 전문위원(4급 상당)이 추천하며, 시민 20인 이상과 시민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4조(수상자 명부)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의회 표창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 호



표 창 장

성 명  
소속 또는 주소

(표 창 문)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 장

위쪽 의회 마크 금박지 인쇄

아래쪽 의회 마크 은박지 인쇄 적색 리본 부착

제 호



상 장

성 명  
소속 또는 주소

(상 장 문)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 장

제 호



# 감 사 장

성 명  
소속 또는 주소

(감 사 문)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  
의 장



#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span style="float: right;">(인)</span>															

##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월일	(20) 이 력	(21) 년월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월일	(24) 내 용	(25) 년월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210mm×297mm [일반용지]

